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사이버보안·개인정보보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대　　상 : 통합보안관리시스템(행정망) / EyeCloudSIM V3.0
❍ 발주기관 : 용인시청 (정보통신과)
❍ 제조사 · 공급사 : ㈜시큐레이어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사이버보안·개인정보보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내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10,062,4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 용 인 시 장 (인)

"제조사 · 공급사" ㈜시큐레이어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사이버보안·개인정보보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대　　상 : 해킹메일 모의훈련 시스템(SLP-RECON)
❍ 발주기관 : 용인시청 (정보통신과)
❍ 제조사·공급사 : ㈜구루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사이버보안·개인정보보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내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2,612,5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 용 인 시 장 (인)

"제조사·공급사" ㈜ 구루앤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사이버보안·개인정보보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대　　상 :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nTracker USB Enterprise)

❍ 발주기관 : 용인시청 (정보통신과)

❍ 제조사 · 공급사 : ㈜엔트랙시스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사이버보안·개인정보보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내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8,403,7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 용 인 시 장 (인)

"제조사 · 공급사" ㈜엔트랙시스템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 사 업 명 : 2027년 사이버보안·개인정보보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 대　　상 : 서버 접속관리시스템(행정망, 공인망) / HIWARE V6.0
- ❍ 발주기관 : 용인시청 (정보통신과)
- ❍ 제조사 · 공급사 : ㈜넷앤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사이버보안·개인정보보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내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7,942,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　　용 인 시 장　(인)

"제조사 · 공급사"　　㈜넷앤드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사이버보안·개인정보보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대　　상 : SSL 트래픽 복호화 시스템(WebKeeper SG V11)
❍ 발주기관 : 용인시청 (정보통신과)
❍ 제조사 · 공급사 : ㈜소만사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사이버보안·개인정보보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내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18,057,6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　　용 인 시 장　(인)

"제조사 · 공급사"　　㈜소만사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사이버보안·개인정보보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대　　상 : 랜섬웨어 차단 시스템(MDS20000B)
❍ 발주기관 : 용인시청 (정보통신과)
❍ 제조사 · 공급사 : ㈜안랩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사이버보안·개인정보보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내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27,773,25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 용 인 시 장 (인)

"제조사 · 공급사" ㈜안랩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사이버보안·개인정보보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대　　상 :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통합관제체계(AhnLab TMS 20000B,AhnLab XTG 70,AhnLab XTG 100,AhnLab XTG 300,AhnLab AIPS)

❍ 발주기관 : 용인시청 (정보통신과)

❍ 제조사 · 공급사 : ㈜안랩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사이버보안·개인정보보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내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12,978,9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　　용 인 시 장　(인)

"제조사 · 공급사"　　㈜안랩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사이버보안·개인정보보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대　　상 : 개인정보 접속기록 모니터링시스템(WEEDS BlackBox Suite)
❍ 발주기관 : 용인시청 (정보통신과)
❍ 제조사 · 공급사 : ㈜제이테크브릿지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사이버보안·개인정보보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내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15,370,05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　　용 인 시 장　(인)

"제조사 · 공급사"　　㈜제이테크브릿지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사이버보안·개인정보보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대　　상 : 개인정보보호 솔루션(PC필터, 출력물보안, 서버필터, 정보유출방지시스템)
❍ 발주기관 : 용인시청 (정보통신과)
❍ 제조사 · 공급사 : ㈜제이테크브릿지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사이버보안·개인정보보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내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27,801,75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 용 인 시 장 (인)

"제조사 · 공급사" ㈜제이테크브릿지 (인)